

제2837호
2021. 6.1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예규]

제174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2

● 공 고

제2021-448호 :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매각 공시송달 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예 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규 제174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조례입법과 정책개발의 활성화 및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되는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의회 의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과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는 회장, 총무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총무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총무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3.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5조(심의사항)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 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의 적정 여부를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 통지 이후에 연구단체의 회장에게 지급한다.

②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활동 기간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비 사용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③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하여 널리 홍보하며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 구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에 따른 주, 정차 위반으로 단속 및 견인된 후 1개월 이상 장기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 인수 및 자진 처리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미인수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강제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기 미 반환 차량 강제매각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06.11 ~ 2021.06.25(15일간)

3. 공고대상 : 장기 미 반환차량 2대

4. 보관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견인차량보관소 (☎02-2280-8376)

5. 공고내용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기간내에 중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후에는 차량은 강제 매각(폐차)처리되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 81조에 의거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 . 06 . 1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공고대상차량>

연번	차량번호	차명	차종	보관일시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1	87보3813	포터	2.5톤미만	2020-04-23 10:10	김종*	강원도 양양군 간현면 주청2길 5
2	09가8556	제어맨	승용대형	2020-03-18 14:45:00 PM	이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20번길 35, 106동 907호